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4. 검토의견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희배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다.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간사를 혁신경영담당관으로 정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